

지식재산권관리 규정

제정 2016.03.01.

개정 2018.03.26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,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자(이하 "교직원"이라 한다)의 직무발명·창작 및 자유발명·창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,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 및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식 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직무발명·창작"이라 함은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·창작한 것이 그 성질상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사업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·창작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.
2. "자유발명·창작"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발명·창작 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이 한 발명·창작을 말한다.
3. "발명자 및 창작자"라 함은 산업재산권 발명 및 저작권 창작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.
4. "지식재산권"이라 함은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애니메이션, 만화, 게임, 뮤지컬 등과 같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Know-how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.
5. "기술이전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"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및 시제품, 시제품, 물질 등의 유형적 결과물을 외부 제3자에게 사용 또는 활용의 목적으로 양도 또는 실시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권리의 승계)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·창작의 경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 및 창작자의 권리를 승계한다. 다만,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.

② 자유발명·창작의 경우 발명자 및 창작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해 규정되거나,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지식재산권관리)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의 위임을 얻어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.

제6조(발명자 및 창작자의 의무) ① 발명자 및 창작자는 재직 중 발명한 기술 및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. 다만 산학협력단이 계속 보유하기를 포기한 특허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발명자 및 창작자가 양도 받을 수 있다.

② 발명자 및 창작자는 특허출원 및 저작권 등록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.

③ 발명자 및 창작자는 학교 및 스쿨 홍보 등, 비영리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등록된 내용을 사용하는데 동의할 의무가 있다.

제7조(비밀의 유지) 발명자 및 창작자, 기술이전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·창작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발명자 및 창작자의 권리) ① 산학협력단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명자 및 창작자에게 본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
② 발명자 및 창작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자신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산학협력단에 발명자 및 창작자 지분조정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다. 산학협력단은 발명자 및 창작자의 신청내용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60일 이내에 답하여야 한다.

제2장 절차

제9조(발명의 신고) 교직원이 자기가 맡은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발명·창작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신고서
2. 양도증

제10조(승계의 결정 및 통지)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 및 창작자로부터 발명·창작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승계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자 및 창작자에게 통지해야한다.

② 1항에 의하여 미승계 통지한 발명·창작에 대해서는 자유발명·창작으로 간주한다.

제11조(출원) ①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 및 창작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을 출원하고, 그 사실을 발명자 및 창작자에게 통지한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우수기술 발굴을 위하여 지식재산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, 그 결과를 국제특허 출원여부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12조(제경비의부담) ① 산학협력단은 승계된 발명에 대해서 권리화에 필요한 제반의 경비를 부담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경비를 발명자 및 창작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, 발명자 및 창작자가 부담하는 금액 및 요건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
③ 산학협력단이 승계된 발명에 대하여 제3자와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공동출원인이 대학, 국책연구소 등 비영리 연구기관이거나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의 공동명의 출원인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에서 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.

제13조(출원등의 제한)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 및 창작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특허 및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 및 저작권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4조(특허권의 유지) ① 본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후 5년 이내에 특허권의 계속 보유 여부를 심의 후 결정하며, 이후에는 매년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이 계속 보유를 포기한 특허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발명자 및 창작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 다만, 정부연구과제의 결과물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.

제3장 기술이전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

제15조(기술이전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의 협의)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, Know-how 등에 대해 기술이전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다만, 정부(공기업 출연포함)의 관계 법령 등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.

제16조(기술이전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의 방법) 기술이전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.

1. 법령 및 규정 또는 관련 계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.
2. 통상 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준, 시장규모,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또는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.

제17조(기술이전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의 사후관리)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필요 또는 실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명자 및 창작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재계약, 계약의 해지 또는 기술료의 감면을 할 수 있다.

② 계약해지의 경우 실시자는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,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가 산학협력단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(懈怠)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8조(보증 및 배상)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조항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.

1.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및 권리 범위에 대한 보증 및 손해배상
2. 지식재산권의 실시가 다른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및 손해배상
3. 지식재산권의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및 손해배상

제4장 보상금

제19조(보상금의 지급)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식재산권의 취득, 유지, 이전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후 산학협력단과 발명자 및 창작자가 각각 50%와 50%로 배분한다.

② 정부주도연구과제 또는 발명자 및 창작자와의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수입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.

제20조(발명자 및 창작자 보상금의 지분) ① 발명자 및 창작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창작자는 발명을 신고할 때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발명자 및 창작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지분은 동등한 것으로 한다.

제21조(보상금 지급시기) 보상금의 지급은 수입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8장 보칙

제22조(분쟁의 조정) 발명자 및 창작자가 본 규정과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3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